

지방재정 관련조직 및 인력운영의 재편방향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I. 서론

최근의 지방행·재정 환경은 복잡·다변화되었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도 질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양적으로도 증대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 등이 촉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와 맞물려 공공부문에 시장경제원리 및 경쟁의 원리가 자리잡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2005년부터 시범실시가 이루어졌던 총액인건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설치 및 인력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재정법이 분법화 되었고, 이외에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서의 폐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그리고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최근 지방재정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전의 사전통제 장치가 사후성과관리체계로 전환됨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예산편성의 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견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서, 세정부서, 회계부서 등 지방재정조직에 대한 현재의 행정서비스 제공수준보다 향후 행정수요의 기대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들 부서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조직은 과거에 비해 조직, 기능, 인력 등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주민과의 교감의 폭도 과거의 관례를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재정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지방행·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한 여수시, 김포시, 마산시, 안산시, 남양주시, 홍천군, 강남구 등의 시정조직진단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임.

바람직한 지방재정조직 및 인력의 재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련조직의 범위는 재정운영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산, 회계, 세정부서에 한정하고자 하며, 조직 및 인력운영 재편의 의미는 향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능 그리고 인력을 개편한다는 의미로 다소 거시적인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직, 기능, 인력에 대한 자료는 2007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통계량에 대해서는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해 2006년 말까지의 통계를 사용하여 양자간에 시점별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분석방법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중 자료구득이 가능한 단체를 선정하여 조직편제, 기능, 인력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II.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직 및 인력 실태

1. 조직 및 기능 현황

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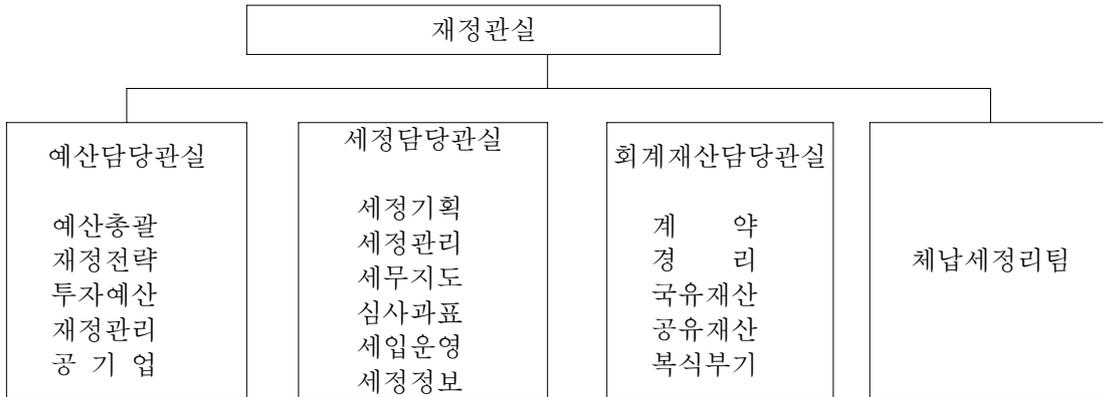
1)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직편제는 자치단체별로 세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A유형은 예산부서, 회계부서, 세정부서를 하나의 실·국으로 편제하는 유형이며, B유형은 예산과 세정부서를 하나로 하고 회계부서를 별도의 실·국으로 편제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C유형은 예산부서를 별도로 하고 회계와 세정부서를 하나로 편제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A유형의 대표적 자치단체는 부산시로서 재정관실 아래 예산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체납세정리팀 및 회계재산담당관실 등이 배치되어 예산, 회계, 세정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고 있다. 반면에 대구시의 경우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예산담당관 및 세정담당관을 배치하고 회계부서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배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B유형의 편제를 갖추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는 예산부서는 예산담당관에 그리고 세정과 회계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배치하고 있어 예산, 회계 및 세정이 별개의 과로 설치되어 있는 C유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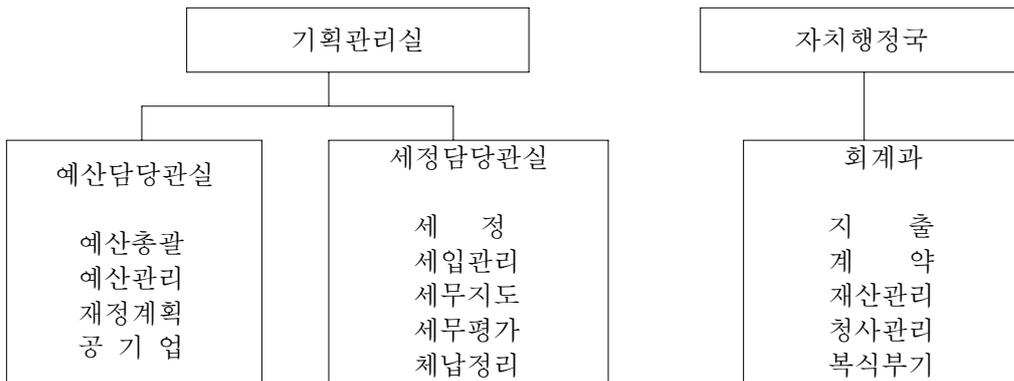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예산, 세정 및 회계부서는 실·국을 기준으로 할 때 각 부서가 갖고 있는 기능을 연계할지 또는 견제 기능에 초점을 둘지에 따라 3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림 1> A유형의 재정조직 체계(부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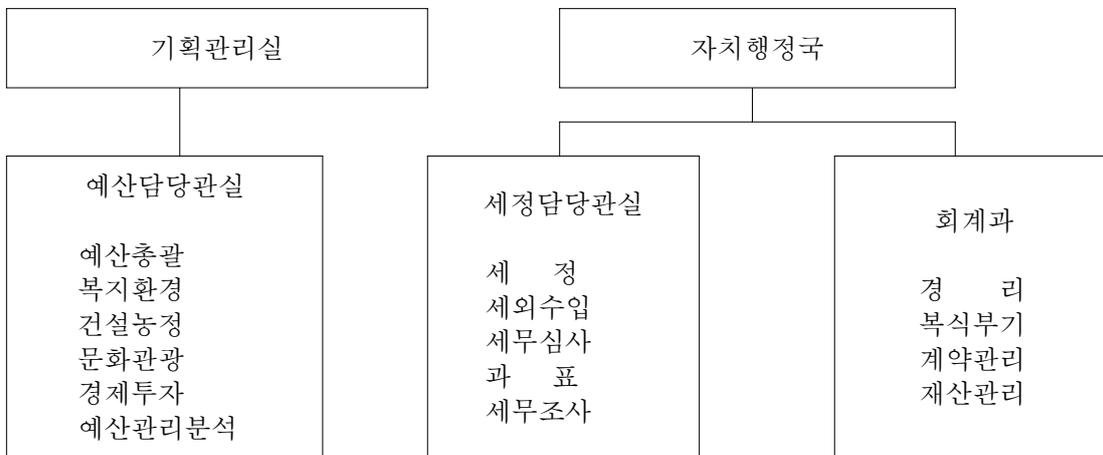
자료: <http://www.busan.go.kr/>

<그림 2> B유형의 재정조직 체계(대구시)



자료: <http://www.daegu.go.kr/>

<그림 3> C유형의 재정조직 체계(경기도)



자료: <http://www.g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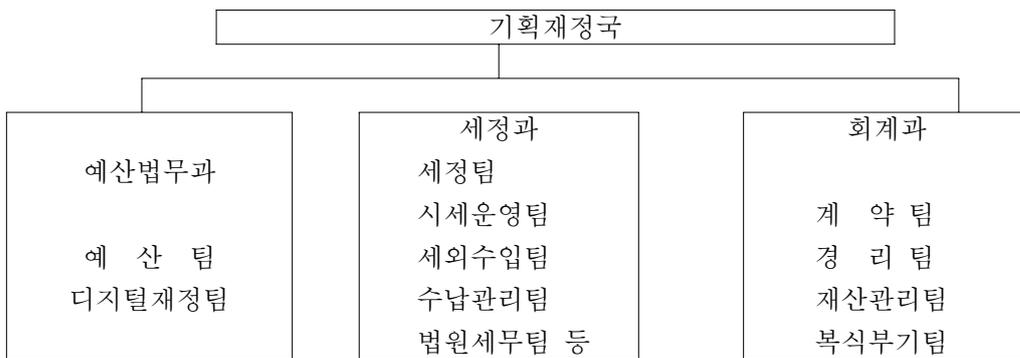
2) 기초자치단체

가) 시

시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직편제는 자치단체별로 두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A유형은 광역자치단체의 A유형과 동일하게 예산부서, 회계부서, 세정부서를 하나의 실·국으로 편제하는 유형이며, B유형은 광역자치단체의 C유형과 같이 예산부서를 별도로 하고 회계와 세정부서를 하나로 편제하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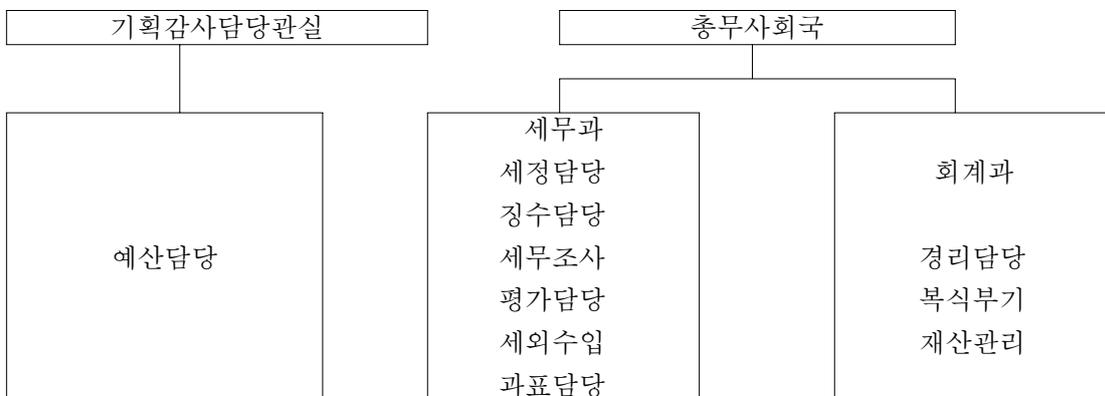
A유형에 속하는 자치단체로는 경기도 부천시의 지방재정조직 편제가 대표적인 예로 될 수 있는 바, 부천시에서는 기획재정국 산하에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를 설치하고 있다. 한편 B유형의 사례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통영시로서 예산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산하에 그리고 세무부서와 회계부서는 총무사회국 산하에 각각 배치하고 있다.

<그림 4> A유형의 재정조직 체계(부천시)



자료: <http://www.bucheon.go.kr>

<그림 5> B유형의 재정조직 체계(통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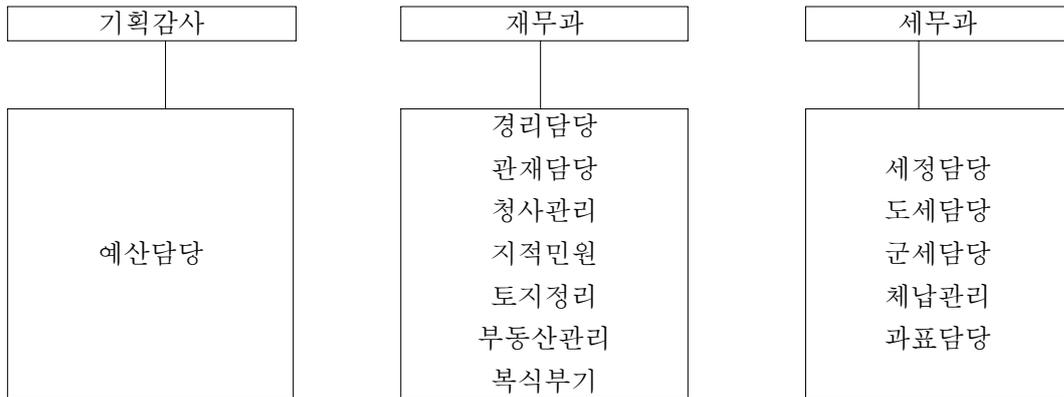
자료: <http://www.tongyeong.go.kr/>

나) 군

군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직편제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A유형은 예산부서, 회계부서, 세정부서를 별도의 조직으로 편제하는 유형이며, B유형은 시 자치단체의 B유형과 같이 예산부서를 별도로 하고 회계와 세정부서를 하나로 편제하는 유형이다. 다만 시와 군의 차이는 회계부서와 세정부서를 별도의 과로 구분하느냐 또는 하나의 과에 두 기능을 함께 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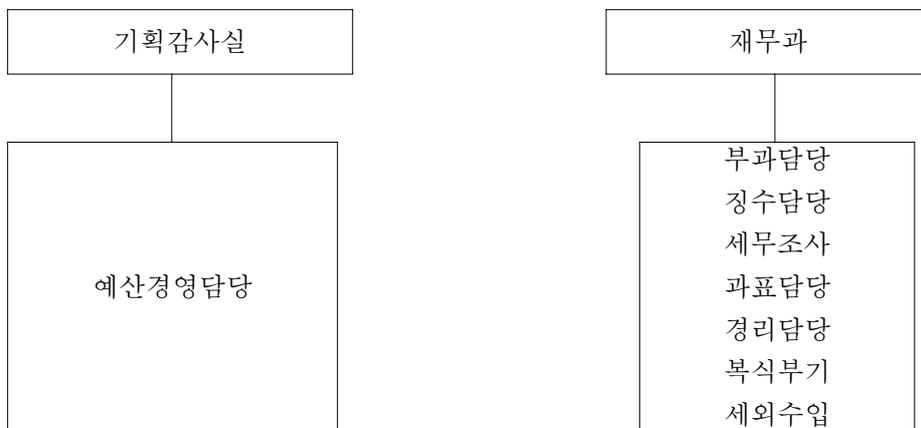
강원도 철원군은 A유형으로 재정조직을 설치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기능을, 재무과에서 회계기능을 그리고 세무과에서 세정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한편 B유형의 사례는 경남 창녕군에서 찾을 수 있는 바, 창녕군은 기획감사실에 예산기능을 두고 재무과에서 회계기능과 세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림 6> A유형의 재정조직 체계(철원군)



자료: <http://www.cwg.go.kr/>

<그림 7> B유형의 재정조직 체계(창녕군)



자료: <http://www.cng.go.kr>

나. 기능

1) 광역자치단체

가) 예산부서의 기능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예산기능은 예산관리,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관리,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 지방채관리, 산하 기초자치단체 교부금관리 그리고 대주민관련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편제가 광역자치단체간에 차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수행하는 기능은 광역자치단체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예산배정방식, 주요관심사업 수행 방법 및 재원조달방식을 둘러싸고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다.

<표 1> 광역자치단체의 주요예산기능

구분	부산	경기	전남
유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별 예산관리 - 의존재원관리 - 성과·사업예산 총괄, 통합 재정수지 업무 - 자치구 조정교부금관리 - 예산관련 시민의견수렴, 재정관련 세미나 - 재정전략대책 - 재정공시, 재정분석 건전화 관련업무, - 주민참여 예산관련 - 지방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기금운용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공기업 및 특별회계업무 종합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제도의 연구·개선 -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의존재원관리 - 재정보전금제도 운영 - 시·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지도 -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지방채관련업무 - 지방공기업 관련 업무 -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운영 총괄 - 각 국별예산관리 - 지방채관련 업무 - 의존재원 관리 - 공사 및 특별회계 관련 사업
지역특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p-down방식에 의한 재원배분 사항 - 재정혁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L 사업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관리 및 숙원사업 예산관리

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나) 세정부서의 기능

광역자치단체의 주요세정기능은 소관세목의 과징업무, 세정기획, 세무조사, 구제제도관련업무 그리고 체납세 정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의 세정기능은 광역자치단체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다만 최근 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2> 광역자치단체의 주요세정기능

구분	부산	경기	전남
유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지방세 조례, 규칙, 훈령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신세원 개발 및 국세 이양에 관한 사항 - 각 세목 과징 업무 - 세무조사관련 업무 - 지방세 구제제도관련 업무 - 체납정리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제도의 운영관련 업무 - 지방세 관련 조례 등 세제에 관한 업무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대한 지도·감독 -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 업무 - 시·군 지방세업무의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관련 종합기획 및 조정 - 지방세 관련 법령,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 체납세 정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 부과징수 - 세무조사 관련 업무
지역 특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보호관제도에 관한 업무 - 시민 서포터즈관련 업무 		

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다) 회계부서의 기능

광역자치단체의 회계기능은 회계고유의 업무 외에 국·공유재산의 관리, 계약관련 업무 그리고 복식부기 관련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각 광역자치단체간에 별다른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표 3> 광역자치단체의 주요회계기능

구분	부산	경기	전남
유사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관련 업무 및 물자관리 업무 - 국유재산관련 업무 - 공유재산 관련업무 - 복식부기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관련 업무 - 지출 및 결산의 관리 - 공유재산의 관리총괄 - 청사·관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관련 업무 - 복식부기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및 회계검사 - 계약관련 업무 - 국유재산관련 업무 - 공유재산 관련업무 - 복식부기 관련 업무
지역특화 기능			

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2) 기초자치단체

가) 시

(1) 예산부서의 기능

시 자치단체의 주요 예산기능도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예산관리, 의존재원관리,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 지방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 자치단체의 예산기능도 업무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조직체계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는 주로 집행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산기능은 주민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기보다 조직내에서의 관리에 초점이 있는 관계로 기능적인 면에서 광역과 큰 차이가 없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자치단체간에도 일부 특수시책의 수행과 관련된 기능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차별성이 없이 수행되고 있다.

<표 4> 시자치단체의 주요예산기능

구분	여수	통영	부천
유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국별 예산업무 - 예산편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의존재원 관리 -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업무 전반 관리 - 의존재원 관리 - 투·융자사업 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용 - 지방공기업 및 경영수익사업,사회단체보조금 - 사업별예산제도 및 재정분석,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업무 전반관리 - 의존재원관리 - 지방공기업 총괄 관리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
지역 특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시책 개발 및 시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숙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시책발굴 T/F팀 운영 - 아웃소싱 등 경영효율화

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2) 세정부서의 기능

시 자치단체의 주요세정기능도 업무단위로는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세무행정의 특성상 광역자치단체는 조정기능에 중점이 있는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대주민 직접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일 예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목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징수와 관련된 기능도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체납세 정리와 관련되어서는 광역과 기초가 상호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표 5> 시자치단체의 주요세정기능

구분	여수	통영	부천
유사 기능	- 세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지방세부과징수 관련 사항 -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 - 세외수입 업무	- 세무행정기획 - 지방세 조례, 규칙 관련 업무 - 각 세목 부과조정 -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	- 지방세관련기획조정 - 각 세목 부과조정 -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
지역 특화 기능			

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3) 회계부서의 기능

시 자치단체의 주요 회계기능은 회계고유의 업무외에 국·공유재산의 관리, 계약 관련 업무 그리고 복식부기 관련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어 업무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각 시자치단체간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시자치단체의 주요회계기능

구분	여수	통영	부천
유사 기능	- 회계소관업무의 기획조정 - 계약관련 업무 - 복식부기 관련 업무	- 회계 업무 기획조정 - 계약관련 업무 - 복식부기 관련 업무 - 청사 관리	- 회계 업무 기획조정 - 계약관련 업무 - 복식부기 관련 업무 - 청사 관리업무
지역 특화 기능			

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나) 군

(1) 예산부서의 기능

군 자치단체의 주요 예산기능도 시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예산관리, 의존재원관리,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 지방채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군 자치단체의 예산기능도 업무단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능은 군 자치단체간에도 두드러진 차별성이 없이 수행되고 있다.

<표 7> 군자치단체의 주요예산기능

구분	창녕	보성	철원
유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경영업무 총괄관리 - 지방공기업 및 경영수익 사업 관리 - 의존재원 관리 - 지방재정투융자 - 사업별예산 - 지방재정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지도와 자금 수급계획 수립 -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운영·집행 - 의존재원관리 - 투융자 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 특화 기능			

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2) 세정부서의 기능

군 자치단체의 주요세정기능도 시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대주민 직접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자치단체간에도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군 자치단체간에는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세정업무와 별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표 8> 군자치단체의 주요세정기능

구분	창녕	보성	철원
유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개별세목 부과 및 징수 - 세무조사 관련 업무 -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개별세목 부과 및 징수 - 세무조사 관련 업무 -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개별세목 부과 및 징수 - 세무조사 관련 업무 - 세외수입 관련 업무 - 체납세 징수관련 업무
지역 특화 기능			

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3) 회계부서의 기능

군 자치단체의 주요회계기능도 시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군자치단체의 주요회계기능

구분	창녕	보성	철원
유사 기능	- 계약관련 업무 - 세외수입 관련 업무 - 청사관리 - 복식부기관관련 업무	- 계약관련 업무 - 세외수입 관련 업무 - 청사관리 - 복식부기관관련 업무	- 계약관련 업무 - 세외수입 관련 업무 - 청사관리 - 복식부기관관련 업무 - 공유재산관리
지역 특화 기능			

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2. 인력현황

가. 광역자치단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재정관련인력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지 않아 전체 인력현황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먼저 지방재정관련인력은 전체 정원의 0.68%(부산시), 0.25%(경기도), 0.38%(전남)로 자치단체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각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기능에 대한 업무량과 인력의 상대적 비교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업무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세입과 징수액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는 총세입과 그리고 세정부서는 지방세징수액 등을 적용하였다.

먼저 예산부서의 경우, 부산시는 공무원 1인당 151,912백만원, 경기도는 302,652백만원 그리고 전남은 171,089백만원으로 나타나 전체 정원중 예산부서의 인력비중이 낮을 수록 처리해야 하는 세입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회계부서의 경우, 부산시 166,613백만원, 경기도 228,834백만원, 전남 117,993백만원으로 분석되어 전남보다 부산시의 1인당 세입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정공무원 1인당 지방세징수액은 부산시 48,514백만원, 경기도 162,715백만원, 전남 12,153백만원 등으로 경기도, 부산시, 전남의 순으로 세정공무원 1인당 지방세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원 1인당 세입총액 및 지방세징수액을 업무량에 대한 대리변수로 파악해 본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공무원 인력은 업무량과는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사례광역시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인력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부산	경기	전남
소계(A)	110	104	76
예산부서(B)	34	31	20
세정부서(C)	45	32	27
회계부서(D)	31	41	29
총세입(E)	5,164,993	9,382,197	3,421,787
지방세징수액(F)	2,183,112	5,206,886	328,136
총정원(G)	16,276	40,801	19,868
(A/G)×100	0.68	0.25	0.38
(E/B)	151,912	302,652	171,089
(F/C)	48,514	162,715	12,153
(E/D)	166,613	228,834	117,993

주: 전남의 회계부서에는 세무회계과 직원중 경리, 계약, 재산관리담당 만을 포함한 경우임.

총세입: 2005년 결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6.

나. 기초자치단체

1) 시

사례 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분석해 본 결과, 예산부서는 부천시 80,260백만원, 통영시 74,317백만원, 여주시 27,487백만원으로 여주시와 부천시의 차이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계부서의 경우는 부천시 22,637백만원, 통영시 19,557백만원, 여주시 21,204백만원으로 세 자치단체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세정부서는 부천시 5,692백만원, 통영시 1,244백만원, 여주시 1,829백만원 등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간에는 광역자치단체 만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부 재정부서의 인력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부서공무원은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세정 및 회계부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사례 시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인력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부천	통영	여수
소계	87	50	125
예산부서(A)	11	5	27
세정부서(B)	37	26	63
회계부서(C)	39	19	35
총세입(D)	882,857	371,587	742,151
지방세징수액(F)	210,596	32,333	115,201
(D/A)	80,260	74,317	27,487
(F/B)	5,692	1,244	1,829
(D/C)	22,637	19,557	21,204

주: 총세입은 2005년 결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6.

2) 군

사례 군 자치단체중 예산부서의 경우는 창녕군 43,867백만원, 보성군 35,754백만원, 철원군 39,105백만원으로 사례 자치단체간에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창녕군이 가장 크고 보성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회계부서의 경우는 창녕군 8,436백만원, 보성군 7,151백만원, 철원군 4,601백만원 등으로 예산부서와는 다르게 철원군에 비해서 보성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정부서는 창녕군 1,103백만원, 보성군 1,151백만원, 철원군 398백만원으로 창녕군과 보성군은 유사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철원군은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 자치단체간의 재정부서 공무원의 인력은 업무량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사례 군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인력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창녕	보성	철원
소계	45	43	62
예산부서(A)	5	6	4
세정부서(B)	14	7	24
회계부서(C)	26	30	34
총세입(D)	219,337	214,523	156,421
지방세징수액(F)	15,438	8,056	9,541
(D/A)	43,867	35,754	39,105
(F/B)	1,103	1,151	398
(D/C)	8,436	7,151	4,601

주: 창녕군의 경우 재무과를 세정과 회계로 구분하였으며 회계부서에 세외수입담당 포함

총세입: 2005년 결산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6.

3. 지방재정 조직 및 인력운영의 문제점

가. 조직 및 기능상의 문제

1) 통합과 분화의 문제

예산부서, 회계부서 및 세정부서는 재원을 매개로 한 수입, 지출, 회계정리의 과정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성립시부터 회계결산까지 3개의 부서는 업무과정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실제로 세정부서의 세수예측을 근거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안을 편성 및 집행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회계부서에서 결산정리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는 별개로 설치되거나 또는 예산, 회계 대 세정, 예산 대 회계, 세정으로 분리 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간에는 조직편제는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제만 다르게 하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

수입과 지출 및 경리부서는 상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별개의 부서가 아닌 업무과정에서 상호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과 분화간 조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유형화할 때, 예산, 회계, 세정기능은 일반행정중 재정관리기능으로 분류된다²⁾. 그리고 이러한 재정관리기능은 현상유지적 기능을 하며 상호연

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체계는 이러한 궁극적인 효과보다는 견제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보수적인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 및 부천시의 경우는 재정관 아래에 예산, 세정, 회계부서를 배치하여 이 3 부서간에 통합과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으나 도, 시, 군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들 3개 부서가 분리 설치되어 업무과정의 연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2) 광역과 기초간의 기능 중복

도와 시·군은 법령상 대응관계에 있지만 실제로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상호간 기능의 중복을 피할 수는 없지만 도의 시군에 대한 관여적 사무와 중복기능의 문제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세정기능을 분석해본 결과 양자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예산과 회계와 같이 내부적 관리기능에 중점이 있는 부서의 경우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능중복 및 관여의 과다로 인해 시·군의 재정관련 업무 영역이 한정적이게 되며 또 도와 시·군간의 권한과 책임 한계도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2003년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가 시·군에 관여하는 사무는 약 258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중 재정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금고 지정 및 변경보고, 회계공무원 이동보고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3> 재정부분에서의 도가 시·군에 관여하는 사무(예시)

관여적 사무	근거
회계관계공무원 이동 보고	재무회계 규칙
감사처리결과 제출	행정감사 규칙
토지 외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지방세법 시행령
조례, 규칙, 개폐보고	지방자치법
지방금고 지정 및 변경 보고	지방재정법

자료: 행정자치부, 행정계층간 승인·협의 등 사무실태 조사보고, 2003.

2) 김병국,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 2003. p. 38.

3) 새로운 기능 발굴 미흡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신공공관리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민편의행정, 행정서비스의 적극화, 행정품질개선, 책임행정의 고양 등 주민과의 연계를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및 회계부서의 경우 내부적 관리과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대주민관계에는 다소 소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정부서의 경우 주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근 일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있으나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의 경우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시 주민위원회 상정 등 대주민과의 관계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자치단체 특성이 맞는 기능을 발굴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의 발전 저하 및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일례로 회계부서중 복식부기팀의 기능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2007년에 복식부기 도입을 준비해 온 우리의 실정상 당연한 결과로서 받아들여 진다. 그러나 복식부기가 도입된 현재에도 복식부기팀의 관장기능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향후는 도입된 복식부기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의 과제가 남아있으며 이는 복식부기도입 만큼 중요한 기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벌써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복식부기팀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나. 인력의 문제

1) 전체 인력 확인의 어려움

현재의 직군구분은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등 9개의 직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인력에 대한 통계도 이들 직군을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및 회계부서는 일반직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인력산정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모든 특수부서의 인력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재정인력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것은 한편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제도 및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제도 및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중요성 만큼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관련 전체 인력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2) 인사적체의 심화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은 국내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나 재정관련부서의 인사적체 문제는 특히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하고 사기증진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제고와 사기증진에 가장 영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승진 등 인사적체의 해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효율적이며 원활한 인력운영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예로 A 광역시의 재정관련부서 인사적체현상을 보면, 적체인력의 비율이 예산부서는 86.1%, 세정부서는 65.4% 그리고 회계부서는 70.0%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승진연한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사적체의 심각성은 관련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4> A 광역시의 인사적체 현황

(단위: 명, %)

구분	예산부서	세정부서	회계부서
현인원	36	52	30
인사적체인원	31	34	21
인사적체비율	86.1	65.4	70.0

자료: A광역시 내부자료.

3) 인력수급의 불균형

일반적으로 지방재정관련 부서의 경우 업무량과 인력간의 상관관계가 미흡하고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인력수급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³⁾.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력수급에서 차이는 <표 15>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과 지방을 모두 합쳐 10,812명인데 반해 국세관련공무원은 18,035명으로 국세공무원 대비 지방세공무원이 60%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를 지방세(38조 732억원)와 국세(147조 3,025억원) 등 세수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인당 35.2억원인데 반하여 국세의 경우는 1인당 81.7억원으로 산술적으로는 국세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세는 대부분이 대장과세이며 재산과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중심의 국세에 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록 1인당 세수는 작게 나타날 지라도 실제 소요되는 인력은 더욱 많게 된다.

3) 업무량과 인력간의 상관관계는 앞의 인력현황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재정관련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는 전체 지방재정공무원의 인력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세무관련공무원에 대해서만 비교함.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실무공무원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를 지원하는 기구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국세의 경우는 국세종합상담센터(128명), 국세공무원교육원(66명), 국세청기술연구소(32명) 등 실무지원부서가 있으나 지방세에는 이러한 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표 15> 지방세와 국세의 조직·인력 비교

구 분	지 방 세	국 세	비 고
세 목	취득세 등록세 등 16개세목	법인세, 소득세 등 16개세목	
세수('07)	38조 732억원	147조 3,025억원	4배
공 무 원	세제 ※ 1관 1개팀	행정경제부 세제실 107명 ※ 1실 3국 1관 13과	6배
	세정	국세청 본청 801명	45배
	심사	국세심판원 105명	10배
	지방	세무서(지방국세청포함)17,022명	1.7배
지원부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명	한국조세연구원 100명 KDI(235명)에서 정책연구 국세종합상담센터 128명 국세공무원교육원 66명 국세청기술연구소 32명	

주: 2007.1.1 기준.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III. 조직 및 인력의 재편방안

1. 지방재정관련조직의 통합

가. 의미

지방재정관련조직의 통합이란 분산되어 있는 예산부서, 회계부서, 세정부서를 하나의 실·국으로 통합·편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세 개부서는 기능적으로 많은 부분이 연계되어 있음에도 수입과 지출간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관계로 업무연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정보자원의 활용을 위한 연결의 경제를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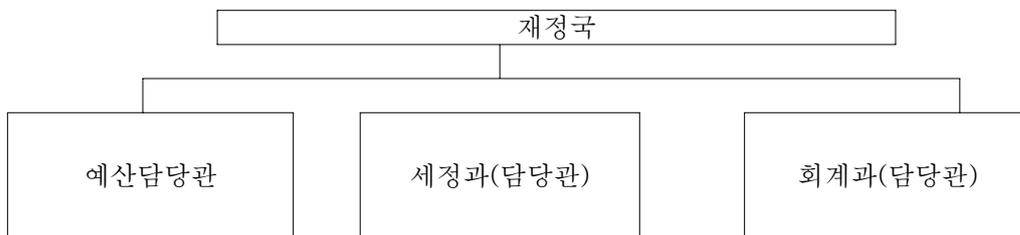
무간에는 유사성 또는 상호성이 많기 때문에 부서간 정보교환을 통한 정보자원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기능간 연계의 필요성이 높은 예산, 회계, 세정을 하나의 조직으로 편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현재 부산시와 부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편제이다.

나. 방법

지방재정관련조직을 통합할 시에는 실·국단위에 예산, 회계, 세정부서를 과 수준으로 배치하여 현재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토록 함으로서 다른 부서의 반발 억제 등 이견을 최소화하고 현실화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각 과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제를 유지하게 된다. 세 부서간의 기능은 현재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유지하되 재정분석과 관련된 기능 만은 회계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재정분석의 대부분이 결산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부서중 주무부서의 선정문제는 사전에 확일적으로 확정하기 보다는 그해의 중점사항 또는 자치단체장이 우선시하는 사업중심으로 선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9> 재정관련조직의 통합체계



다. 장·단점

재정관련조직을 통합·편제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제고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성과평가의 범위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역할에 대한 평가는 재정관리와 성과관리체계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계획, 집행, 평가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⁵⁾. 따라서 조직의 내부적 관계인 예산, 회계, 세정은 예산을 매개로 하여 하나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성과평가의 범위가 명확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

4) 한상연, 지방정부 부서간 정보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1996. p. 129.

5) 이재원,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2002. p. 215.

라 지방자치관련 중앙부서인 행정자치부의 관련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중앙조직과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순기능도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예산, 회계, 세정부서의 전통적인 조직편제의 이념인 수입과 지출간의 견제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표 16> 지방재정조직의 통합에 따른 장·단점

장점	단점
조직의 생산성 증대 업무의 효율성 증대 책임소재의 명확 성과평가 범위 명확	부서간 견제기능 취약

2. 주민과 연계기능 강화

가. 필요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의 행정업무 제공수요와 향후 행정수요기대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가 <표 17>에 요약되어 있다.

본 조사결과에서 차이가 클 수록 향후 기능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수시의 경우는 세정부서가 0.74로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마산시(0.91), 김포시(0.27) 역시 세정부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다. 반면에 회계부서는 대체로 변화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편이며 특히 김포시의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는 주민들의 기대치가 현재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⁶⁾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부서중 세정부서에 기대치가 높은 것은 직접 주민과 연계되어 수행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주민의 기대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로 주민과의 관계변화 속에서 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부서중 세정부서는 고객관리에 대한 기능이 양적·질적으로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행정 전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 역시 대 주민관계에 보다 많은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6) 마산시, 마산시 행정조직진단, 2007. p. 37.

<표 17> 자치단체별 행정업무제공수요와 행정수요 기대수준과의 차이
(단위: %)

자치단체별	부서별	차이	조사시기	비고
여수시	전체 평균	0.59	2006년	
	예산부서	0.59		
	회계부서	0.47		
	세정부서	0.74		
마산시	전체 평균	0.76	2007	
	예산부서	0.54		
	회계부서	0.52		
	세정부서	0.91		
김포시	예산부서	0.04	2003	전체평균과의 차이임
	회계부서	-0.28		
	세정부서	0.27		

자료: 각 자치단체별 행정조직진단 결과.

나. 방안

주민과 교감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정부서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주민과의 관계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할 때, 예산부서의 경우는 예산안 편성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집행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되 주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 회계부서의 경우는 기능 자체가 내부적 관리기능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교감 폭은 상대적으로 넓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으로 재정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의 재정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회계결과의 공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주민과의 교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정부서의 경우는 과세권자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세정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대표적 사례로 세정상담업무의 체계화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주민과의 교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주민의 수요 파악이 선행 요건이 될 수 있는 바, 주민의 수요파악 방법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산된 민원 채널의 종합화·전문화. 즉, 전화·서면·인터넷·방문 민원 처리를 통하여 One Stop, Total Service를 구현하고 그 결과를 주민수요 파악의 수단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계적인 고객관리를 위해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대응 결과를 DB로 구축. 즉, 수요에 대한 대응결과를 DB로 표준화하여 행정서비스질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민원 접점으로부터 제도개선 사례를 발굴·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원인의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홈페이지 기반을 구축. 즉 홈페이지에는 정책홍보 자료, DB 자료 공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의 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 민원인이 스스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주민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재경직의 신설

가. 의미

지방재경직은 재원을 매개로 기능하는 부서를 하나의 직렬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재경직이 도입될 경우 지방의 일반직군 내에 별도의 재경직렬이 생기게 된다.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며 평가하는 일련의 인력관리활동은 공직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공직의 분류는 공무원의 채용부터 보직관리, 승진, 교육훈련, 보수 등 인력관리의 모든 국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정부관료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정부인력관리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회계부서의 공무원은 채용시 다른 직렬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인력운영은 별도 관리되고 있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부서의 공무원도 다른 직렬의 공무원도 동일하게 인사 및 전보가 이루어져 재정부서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희석되어 전문성 제고에도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경직을 도입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방법

지방재경직은 현재의 예산부서, 회계부서 및 지방세정부서로서 구성되며 일부 직렬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승진상한제를 폐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나 단위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관리계층의 인사도 일반행정가로서의 일반적인 시각과 지식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외에도 지방재경직을 채용할 때에는 재무행정, 정부회계, 지방세 등 지방재경

7)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p. 159.

8) 하태권 외,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2000. 12, p. 106.

관련 과목을 포함하여 신입공무원을 선발하고 승진 및 전보 시에는 재경직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조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장·단점

지방재경직이 도입될 경우 채용부터 승진, 전보, 교육 등 인사과정 전반에서 차별화된 정책의 시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점도 어느정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세무부서의 경우는 인사이동의 폭이 확대되어 인력관리의 탄력성이 제고될 수 있다.

반면에 일반행정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전반의 인사정책에 반하고 예산 부서나 회계부서의 경우 오히려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표 18> 지방재경직 신설에 따른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능력을 갖춘 공무원 채용 ·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취약해질 수 있는 문제 완화 · 인력관리의 탄력성 제고(세무부서) · 재정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행정가 양성 미흡 · 인력운영의 탄력성 저하 (예산 및 회계부서)

IV. 결론

본 연구는 예산, 회계, 세정부서 등 지방재정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지방행·재정 환경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조직 및 인력의 재편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조직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조직은 다양한 편제를 갖추고 있으나 기능적인 면에서는 자치단체간에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인력은 업무량과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고 재정부서간의 업무연계도 유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직 및 인력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 측면에서는 재정관련조직의 통합, 기능적 측면에서는 주민과의 연계기능 강화, 인력운영 측면에서는 지방재경직의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정관련 조직의 통합은 예산, 회계, 세정부서를 하나로 조직으로 편제하여 재원을 매개로 기능하는 부서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과의 연계기능 강화 방안은 지금

까지의 지방재정기능이 주로 내부관리적 기능에 중심이 있었으나 이를 주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교감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경직 신설 방안은 지방재정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한편에서는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방법론상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재정조직 및 인력운영의 재편”이라는 다소 거시적 제하에서 대안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예산, 회계, 세정 등 3개 부서간 공통적 관심사를 대상으로 연구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실제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미시적인 문제가 많이 발견되지만 이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가 재정수입 및 지출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재정조직 및 인력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방재정부서의 조직 및 인력운영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실적이 전혀 없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수입 및 지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중요성 만큼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관련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된다.